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1년 7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1991년 8월 1일

다. 상정일자 : 제70회 임시회

○ 제1차 내무위원회(1991. 8. 13)

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담당관 박 남 규)

가. 제안이유

○ 1991년 7월 19일 도직제 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업무 전달부서가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변경됨에 따라
○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리자를 이에 맞추어 변경 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리자 지정 변경에 있어 내무국장을 기획 관리실장으로 (안 제2조의 2)
○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관리 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변경에 있어 부위원장 을 내무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 중 지방과장은 예산담당관으로 변경(안 제15조)하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민 귀식)

충청북도 지역개발 특별회계 업무전담 부서가 도직제 개편으로 내무국에서 기획 관리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하는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조및 충청북도 직제규칙 제4조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을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8. 기타필요한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9. 심사보고서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증 개정 조례안

나. 신구조문 대비표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(중개정조례)(안)

제2조의2 (관리자 지정) 제2항 중 “내무국장” 을 “기획관리실장” 으로 한다.

제15조 (위원장 및 위원) 제2항 중 “내무국장” 을 “기획관리실장” 으로 “지방과장” 을 “예산담당관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조례명 :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

현 행	개 정
<p>제2조의2 (관리자의 지정)</p> <p>① "생 략" ② 관리자는 <u>내무국장</u>으로 한다.</p>	<p>제2조의2 (관리자의 지정)</p> <p>① "현행과 같음" ② 관리자는 <u>기획관리실장</u>으로 한다.</p>
<p>제15조 (위원장 및 위원)</p> <p>① "생 략"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<u>내무국장</u>으로 하며, 위원은 <u>지방과장</u>, 보건과장, 지역경제과장, 관광과장, 도시과장 등 관계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15조 (위원장 및 위원)</p> <p>① "현행과 같음" ② 부위원장은 <u>기획관리실장</u>으로 하며, 위원은 예산담당관,</p>